



제 1003 호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례 제10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례 제10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5
○ 조례 제10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15
○ 조례 제10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조례 제10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조례 제10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28
○ 조례 제10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조례 제10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규 칙	
○ 규칙 제78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 51
공 고	
○ 공고 제2011- 1130호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2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65
○ 공고 제2011- 11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 계획 열람 공고 87
○ 공고 제2011- 1137호	인천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보상관련 공시송달 공고(2차) 88
○ 공고 제2011- 1159호	소액수의(빗물이용시설 제작설치)견적제출 안내 공고 90
○ 공고남동문화예술회관 제2011-4호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93

회 람								
----------------	--	--	--	--	--	--	--	--

고 시

- 고시 제2011- 7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대로2-46호선)시행자지정 121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 제2011- 77호 도로면주소 폐지 고시 125
- 고시 제2011- 78호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 131
도면 고시(정정)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9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10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3호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공공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
- 14.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신규 사업(공공문화시설 관리,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운영)의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관리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사업 추가 (제23조)
 - 공공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
 - 공영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사업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9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10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도카드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효도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참여업소”라 함은 효도카드제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3. “효도카드”라 함은 가입자가 참여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 효도카드제에 가입한 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

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효도카드제 운영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효도카드제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도카드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가입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효도카드제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업소의 자격) 참여업소의 자격은 구에 사업장을 둔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

1. 공중위생업소 : 이·미용업소, 목욕업(찜질방, 사우나), 세탁소 등
2. 식품위생업소 :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 여가시설업소 :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용품 판매 및 영화관 등
4. 그 밖의 업소 : 안경점, 사진관 등

제5조(참여업소 등록신청 등) ① 효도카드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참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여업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참여업소에서 제공할 할인제공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 중 참여업소를 선정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효도카드제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받은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전면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해당 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할인율(금액)을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효도카드제에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효도카드제 가입 신청자격) 효도카드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8조(효도카드 발급절차 등) ① 효도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발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효도카드 발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신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효도카드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효도카드의 사용) ① 효도카드는 가입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효도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효도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효도카드의 사용중지 등)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가입자가 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가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카드를 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 및 제8조의 업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효도카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참여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효도카드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		상 호	
	소재지			
업 종			전화번호	
주요품목				
할인제공 내 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효도카드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효도카드제 참여업소 안내표지]



※ 규격 : 가로 12cm × 세로 12cm

[별지 제3호 서식]

효도카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HP)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남동구 효도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효도카드 발급대상자 명단

《 행정동명 》

[illegible]

[별지 제5호 서식]

[효도카드]

발급처 : 남동구		동 (제 - 호)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1의 남동구	
효도카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남동구	동	번지	호	사진부착
		아파트(빌라)		동 호	
연락처	(H·P :)				
이 어르신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의한 경로대상 어르신이오니 정성을 다하여 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 앞 면 》

유 의 사 항

1. 효도카드 참여업소 표지판 부착업소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하였으니,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효도카드 참여업소』 스티커 부착업소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카드는 남동구에 소재한 참여업소에 한해 적용됩니다.
4. 이용시 불편하신 사항은 남동구 주민복지과(☎453-585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뒷 면 》

※ 규격 : 가로 8cm × 세로 5cm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자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주민참여 복지를 실현하고, 노인에게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로우대 및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업소의 행·재정적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효도카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운영원칙 (제3조)
- 참여업소의 자격 (제4조)
- 참여업소 등록신청 등 (제5조)
- 효도카드제 가입신청자격 (제7조)
- 효도카드 발급절차 등 (제8조)
- 효도카드 사용중지 등 (제10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9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10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평가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걱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7조(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구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소속 인사 3명 이내
4.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및 제22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주요내용

- 평가대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제1장)
- 평가방법 :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 등 다각적인 방법 도입 (제2장)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총 11명 내외로 구성 (제3장)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9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10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점포 등을”을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8조제1항 제9호,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의하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협의사항 추가 (제8조제1항 제9호)
 -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확대 (제11조제1항)
 - 500미터 → 1킬로미터
- 전통산업보존구역에서의 개설등록 신청대상 범위 조정 (제15조제1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9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10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제8조의2는”을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
- 상시출장비와 월액여비 개념의 혼용에 따른 관련 조문 내용 정비

☐ 주요내용

- 폐지된 제도인 월액여비 관련 문구 삭제 (제2조)
 - 상시출장비와 월액여비 개념의 혼용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국외숙박비 단가 인상(평균 24.2%) 및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른 준용 근거 마련 (제4조제1호)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9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10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 및 구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②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 ③ “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
- ④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 ⑤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며 남동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 ⑥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의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⑦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⑧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 ⑨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⑩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 ⑪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⑫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 ⑬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 ⑭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8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지불서약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임금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구청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구청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6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전력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이 완료된 공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제9조 관련)

우리 업체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
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
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금 지급계획서(제10조 관련)

☐ 사업명 :☐ 업체명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청구금액(원)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계획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 ○ ○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제10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사용주		사용일	임대료 청구금액(원)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 ○ ○ 귀하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급공사의 발주대상 및 지역건설근로자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 적용대상사업 (제3조 및 제4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9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10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수수료 징수방법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추가 (제6조제2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9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10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수입증지의”를 “수입증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를 “제3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구공보 또는 게시판에”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이하 “구보”라 한다) 또는 게시판이나 구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증지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이나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3(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사용부서의 장, 동은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상태의 주기적 점검으로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 관리
3. 일일 수입금 정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준비금 관리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사업소”를 “구 본청”으로, “제2항의 규칙”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를 판매인에게 교부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2”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정된”을 “지정된 자가”로 한다.

제16조와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판매인 수수료) ①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구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②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입금 납부 및 정산) ① 제8조 단서에 따라 증지를 판매한 공무원 은 증지 판매대금을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 증지 판매대금은 별지 제2호의2 서식,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④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잘못 인영된 증지원본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금액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정에서 처음 넣어둔 준비금 중 일부금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만큼의 준비금만 넣어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지 않은 준비금은 즉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또는 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은 즉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④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사항의 기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제1항 중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을 “수수료를 증지로 수령한 경우에는”으로, “증지문제”를 “증지 문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다만,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2항 중 “환매하여야”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 금고액”을 “구 금고”로, “제17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3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남동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1. 수입증지판매소 지정 위치

(에서)

2. 직 업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2호의2 서식]

수입증지 판매대장

구 분	전일잔고		금일판매		금일잔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150원						
200원						
300원						
400원						
45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계						

전일(금일) 판매대금 원을 년 월 일 구금고에
입금완료 후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의3 서식]

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리대장

(무인발급기번호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illegible]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규정 신설 (제5조의2)
- 계기의 관리책임자 조문을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신설 (제5조의3)
- 수입증지 판매대금,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조문 정비 (제17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9월 23일

남동구 규칙 제78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공무원이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및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법」 제64조”를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공무원”이라 함은”을 ““조사공무원”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일반조사”라 함은”을 ““일반조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조사”라 함은”을 ““특별

조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직접조사”라 함은”을 ““직접조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면조사”라 함은”을 ““서면조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전자신고”라 함은”을 ““전자신고”란”으로 한다.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저해하지”를 “해치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7일전에”를 “10일 전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일 이내에”를 “조사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작하되”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1조제1항 중 “실시함에 있어서”를 각각 “실시할 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변호사 등”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으로, “입회하거나”를 “참석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년간”을 “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착수예고”를 “조사시작 예고”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7조 제목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착수하는”을 “시작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조사내용보고)”를 “(조사복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고해야”를 “복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고서”를 “복명

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준비조사시”를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든 조사적출사항에”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에 따른 납기전”을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납기 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칙”을 “행동수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 업 년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법 인 유 형 제 조 업 () 건 설 업 () 판 매 업 () 운 송 업 () 기 타 ()	주요목적사업
--	---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97mm²×210mm²)

지 방 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남동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세무과
우편번호 : 000-000

※ 문의사항 전화 : (000) 000-0000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그 밖의 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서 식 목 차

1. 특별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		사업장명	
------	--	-----	--	------	--

구분 월별	① 소득세 납부액								② 산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액	납부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mm×210mm)

※ 서식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등

「법인세법」 98조 :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주민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a)	① 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 정 당 세 액 (d)	기납부 세 액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b)					

(297mm×210mm)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m^2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m^2 이상은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times$ 250원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 말 정 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② 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③ 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④ = (a - b)															
급여지급일															
④ 산출세액 ④ ×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97mm×210mm)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제3항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제17조 및 제18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외요건 추가 (제30조)
- 분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제1조, 제2조, 제17조,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제2조, 제4조, 제11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1130호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2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2차>
3. 사업의 위치 : 인천 남동구 일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1. 9.19. ~ 2011. 10.4.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93)
6. 수용재결신청물건 : 별첨 사업자제시액조서 참조
7.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제시액조서토지(소유자별)

사업지구 :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금액 및 주소는 명시하지 않았으니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도시관리과에 비치 열람 가능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 전지번	지목		판입면적	지분	지분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용도지역
				공부	현황				성명	주소	성명	관계종류		
1	남동구 구월동	833-1		전	전	3,134	2314/3134	2,314	강선구					자연녹지지역
	강선구의 소계							2,314						
2	남동구 구월동	472-6		전	전	502	1/1	502	강선철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관교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관교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강선철의 소계							502						
3	남동구 구월동	784-4		전	전	1,739	1/2	870	고광란					자연녹지지역
	고광란의 소계							870						
4	남동구 구월동	465-4		전	전	794	1/1	794	고성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건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건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건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5-8		전	구	183	1/1	183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5-9		전	전	577	1/1	577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고성주의 소계							1,554						
5	남동구 구월동	787-0		전	전	827	331/827	331	공성기					자연녹지지역
	공성기의 소계							331						
6	남동구 구월동	446-4		도	도	139	1/1	139	공용택					자연녹지지역
	공용택의 소계							139						

7	남동구 구월동	789-1		전	전	1,831	1/1	1,831	권영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권영인의 소계							1,831						
8	남동구 구월동	448-5		전	전	1,207	407.7/1223	402	권중안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48-5		전	구	16	407.7/1223	5						자연녹지지역
	권중안의 소계							408						
9	남동구 구월동	790-1		전	전	1,805	1/1	1,805	김계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90-4		구	구	268	1/1	268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김계순의 소계							2,073						
10	남동구 구월동	847-2		답	답	95	1/1	95	김동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구월남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구월남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김동연의 소계							95						
11	남동구 구월동	781-1		구	구	106	1/1	106	김두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82-3		구	구	102	1/1	102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82-5		구	구	129	1/1	129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95-1	795	전	전	3,040	1/1	3,04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김두만의 소계							3,377						
12	남동구 구월동	782-4		전	전	717	1/1	717	김명숙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82-6		전	전	816	1/1	816						자연녹지지역

	김명숙의 소계						1,533						
13	남동구 구월동	788-0		전	전	3,220	1/1	3,220	김석원				자연녹지지역
	김석원의 소계							3,220					
14	남동구 구월동	771-2		대	대	369	1/1	369	김수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1-2	간석1,3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2	인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1-2	간석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1-2	인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1-2	간석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71-2		대	도	28	1/1	28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1-2	인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2	인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1-2	간석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1-2	간석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1-2	간석1,3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김수경의 소계							397					
15	남동구 구월동	768-0		답	답	1,005	1/2	503	김수자				제종일반주거지역
	김수자의 소계							503					
16	남동구 구월동	522-0		전	전	645	1/1	645	김순희				자연녹지지역
	김순희의 소계							645					
17	남동구 구월동	457-0		답	답	3,194	1000/3223	991	김승곤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백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현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현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3 동남아파트 106-603호	안종아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57-0		답	구	29	1000/3223	9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3 동남아파트 106-603호	안종아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현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현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백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김승곤의 소계						1,000						
18	남동구 구월동	523-1		임	임	1,689	1/1	1,689	김연옥				자연녹지지역
	김연옥의 소계						1,689						
19	남동구 구월동	523-2		임	임	1,094	1/1	1,094	김월연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구월북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김월연의 소계						1,094						
20	남동구 구월동	461-2		전	전	2,376	1/1	2,376	김인웅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1-2		전	구	142	1/1	142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1-5		전	구	1	1/1	1					자연녹지지역
	김인웅의 소계						2,519						
21	남동구 구월동	461-3		답	답	1,256	1/1	1,256	김인자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5 효성하이맨션 7동 913호	강희돌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석암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석암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관교동 삼환차이파트 101동 1401호	이기춘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13 현대홈타운 15동 601호	송철옥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산단사동삼아원 21동 101호	정윤례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김인자의 소계						1,256						
22	남동구 구월동	541-0		전	전	2,275	35805/2387	341	김정애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7-1 현대아파트 401-1801호	김영애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541-0		전	도	16	35805/2387	2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7-1 현대아파트 401-1801호	김영애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김정애의 소계							344					
23	남동구 구월동	458-0		답	답	1,559	1/2	780	김정윤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58-0		답	구	41	1/2	21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김정윤의 소계							800					
24	남동구 구월동	771-1		대	대	372	1/1	372	김정자				제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71-1		대	도	21	1/1	21					제종일반주거지역
	김정자의 소계							393					
25	남동구 구월동	490-1		임	임	5,947	1/1	5,947	김종렬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90-2		전	전	684	1/1	684					자연녹지지역
	김종렬의 소계							6,631					
26	남동구 구월동	785-0		전	전	2,261	1/1	2,261	김종찬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85-1		구	구	149	1/1	149					자연녹지지역
	김종찬의 소계							2,410					
27	남동구 구월동	488-0		전	전	2,778	1/2	1,389	김진선	인천 서구 가정동 501-22	최만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88-0		전	도	25	1/2	13		인천 서구 가정동 501-22	최만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김진선의 소계							1,402					
28	남동구 구월동	855-5		전	도	41	1/1	41	김진현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부평2동 새마을금고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부평2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김진현의 소계							41					
29	남동구 구월동	489-0		임	임	1,755	1/1	1,755	문양순				자연녹지지역
	문양순의 소계							1,755					

30	남동구 구월동	492-0		전	전	1,988	1/1	1,988	문용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문용기의 소계							1,988						
31	남동구 구월동	541-0		전	전	2,275	9548/2387	910	민선기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541-0		전	도	16	9548/2387	6						자연녹지지역
	민선기의 소계							916						
32	남동구 구월동	541-0		전	전	2,275	35805/2387	341	민현호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541-0		전	도	16	35805/2387	2						자연녹지지역
	민현호의 소계							344						
33	남동구 구월동	472-1		전	전	1,818	1/1	1,818	박기호					자연녹지지역
	박기호의 소계							1,818						
34	남동구 구월동	535-5		전	전	1,653	1/1	1,653	박수진					자연녹지지역
	박수진의 소계							1,653						
35	남동구 구월동	769-1		전	전	670	1/1	670	박승안					제2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69-1		전	대	118	1/1	118						제2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69-1		전	도	35	1/1	35						제2종일반주거지역
	박승안의 소계							823						
36	남동구 구월동	466-0		전	전	2,061	1/1	2,061	박용현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6-0		전	구	35	1/1	35						자연녹지지역
	박용현의 소계							2,096						
37	남동구 구월동	457-2		전	전	219	1/2	110	박정애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57-5		전	구	6	1/2	3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0-0		전	전	3,966	1/2	1,983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0-3		전	구	87	1/2	44						자연녹지지역
	박정애의 소계							2,139						

38	남동구 구월동	791-1		전	전	2,023	1/1	2,023	박종봉					자연녹지지역
	박종봉의 소계							2,023						
39	남동구 구월동	459-0		답	답	3,761	1/1	3,761	박창범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59-0		답	구	146	1/1	146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59-1		구	구	105	1/1	105						자연녹지지역
	박창범의 소계							4,012						
40	남동구 구월동	455-1		답	답	1,223	1/1	1,223	박희태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55-1		답	구	136	1/1	136						자연녹지지역
	박희태의 소계							1,359						
41	남동구 구월동	532-0		전	전	1,402	1/1	1,402	배준길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배준길의 소계							1,402						
42	남동구 구월동	790-6		구	구	172	1/1	172	서재진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0-204	유기형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90-7	790-3	전	전	1,060	1/1	1,060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0-204	유기형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서재진의 소계							1,232						
43	남동구 구월동	779-1		전	전	549	1/1	549	성백오					자연녹지지역
	성백오의 소계							549						
44	남동구 구월동	787-0		전	전	827	496/827	496	성정옥					자연녹지지역
	성정옥의 소계							496						
45	남동구 구월동	467-0		전	전	5,387	1/1	5,387	손무호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오정농업협동조합[오대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오정농업협동조합[오대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7-0		전	구	213	1/1	213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오정농업협동조합[오대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오정농업협동조합[오대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손무호의 소계							5,600						

46	남동구 구월동	465-5		전	전	971	1/1	971	송숙자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6	부평농업협동조합[제일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6	부평농업협동조합[제일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5-5		전	구	186	1/1	186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6	부평농업협동조합[제일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6	부평농업협동조합[제일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송숙자의 소계							1,157						
47	남동구 구월동	787-3		답	답	496	1/1	496	신덕철					자연녹지지역
	신덕철의 소계							496						
48	남동구 구월동	448-5		전	전	1,207	815.3/1223	805	신봉우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48-5		전	구	16	815.3/1223	11						자연녹지지역
	신봉우의 소계							815						
49	남동구 구월동	781-2		전	전	2,400	1/1	2,400	신종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기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기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기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기지점]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신종태의 소계							2,400						
50	남동구 구월동	542-0		잡	전	568	1/1	568	심인복					자연녹지지역
	심인복의 소계							568						
51	남동구 구월동	457-0		답	답	3,194	1223/3223	1,212	안종아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현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현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백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57-0		답	구	29	1223/3223	11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백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현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현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안종아의 소계						1,223						
52	남동구 구월동	535-4		전	전	1,653	1/1	1,653	양인석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논현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논현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양인석의 소계						1,653						
53	남동구 구월동	492-2		전	전	749	1/1	749	오병윤				자연녹지지역
	오병윤의 소계						749						
54	남동구 구월동	791-2		전	전	2,357	1/1	2,357	오상우	경북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646-3	직지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경북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646-3	직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91-3		구	구	188	1/1	188		경북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646-3	직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경북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646-3	직지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오상우의 소계						2,545						
55	남동구 구월동	525-2		전	전	2,578	1/1	2,578	오정숙				자연녹지지역
	오정숙의 소계						2,578						
56	남동구 구월동	787-5		전	전	529	1/1	529	오중식				자연녹지지역
	오중식의 소계						529						
57	남동구 구월동	784-2		전	전	2,056	1/1	2,056	오희태	서울 양천구 신정3동 32-2 목동산가사파트 25호	채홍립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오희태의 소계						2,056						
58	남동구 구월동	786-0		답	답	2,460	1/1	2,460	유병웅				자연녹지지역
	유병웅의 소계						2,460						
59	남동구 구월동	458-1		구	구	99	1/1	99	유정식				자연녹지지역
	유정식의 소계						99						
60	남동구 구월동	541-0		전	전	2,275	179052387	171	윤민영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	국민건강보험공단[무찬남부지사]	압류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541-0		전	도	16	179052387	1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	국민건강보험공단[무찬남부지사]	압류	자연녹지지역
	윤민영의 소계						172						

61	남동구 구월동	541-0		전	전	2,275	179025/2387	171	윤소영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	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남부지사)	압류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541-0		전	도	16	179025/2387	1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	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남부지사)	압류		자연녹지지역
	윤소영의 소계							172						
62	남동구 구월동	760-0		대	대	330	1/1	330	윤주원					제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60-1		전	도	11	1/1	11						제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60-2		대	대	330	1/1	330						제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60-3		전	전	1,253	1/1	1,253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60-4		전	전	1,293	1/1	1,293						제종일반주거지역
	윤주원의 소계							3,217						
63	남동구 구월동	834-0		전	전	926	1/1	926	이경애	인천 중구 운남동 433-3	중구농업협동조합[용유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중구 운남동 433-3	중구농업협동조합[용유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이경애의 소계							926						
64	남동구 구월동	528-0		전	전	1,083	1/1	1,083	이경재					자연녹지지역
	이경재의 소계							1,083						
65	남동구 구월동	787-4		전	전	496	1/1	496	이공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오양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이공우의 소계							496						
66	남동구 구월동	463-0		답	답	2,546	1/1	2,546	이대규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3-0		답	구	145	1/1	145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3-1		전	전	79	1/1	79						자연녹지지역
	이대규의 소계							2,770						
67	남동구 구월동	461-1		답	답	1,891	1/2	946	이번실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1-1		답	구	7	1/2	4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1-4		답	답	464	1/2	232						자연녹지지역
	이번실의 소계							1,181						
68	남동구 구월동	457-2		전	전	219	1/2	110	이사목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57-5		전	구	6	1/2	3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0-0		전	전	3,966	1/2	1,983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0-3		전	구	87	1/2	44						자연녹지지역
	이사목의 소계							2,139						
69	남동구 구월동	796-0		전	전	1,653	1/1	1,653	이상환					자연녹지지역
	이상환의 소계							1,653						
70	남동구 구월동	799-1	799	전	전	79	1/1	79	이양배					자연녹지지역
	이양배의 소계							79						
71	남동구 구월동	832-0		전	전	2,250	1/1	2,250	이영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업협동조합[소사동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업협동조합[소사동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업협동조합[소사동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업협동조합[소사동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업협동조합[소사동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이영호의 소계							2,250						
72	남동구 구월동	461-1		답	답	1,891	1/2	946	이재현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1-1		답	구	7	1/2	4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1-4		답	답	464	1/2	232						자연녹지지역
	이재현의 소계							1,181						
73	남동구 구월동	758-1	758	답	답	140	1/2	70	이정옥					자연녹지지역
	이정옥의 소계							70						
74	남동구 구월동	792-0		전	전	2,803	1/1	2,803	이종중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동춘동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동춘동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동춘동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이종중의 소계							2,803						
75	남동구 구월동	494-4		임	임	678	1/1	678	이청기					자연녹지지역

	이청기의 소계						678						
76	남동구 구월동	462-0		전	전	2,233	1/1	2,233	이춘우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무역센터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2-1		답	답	46	1/1	46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무역센터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2-7		답	답	4	1/1	4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2-8		답	답	11	1/1	11					자연녹지지역
	이춘우의 소계							2,294					
77	남동구 구월동	550-7	550-2	도	도	126	2/10	25	이희자				자연녹지지역
	이희자의 소계							25					
78	남동구 구월동	720-0		전	전	1,395	1/1	1,3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21-0		전	전	1,965	1/1	1,965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21-0		전	대	91	1/1	91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22-0		전	전	1,069	1/1	1,069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22-0		전	구	32	1/1	32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23-0		전	전	380	1/1	380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1072-47		전	전	585	1/1	585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1072-47		전	대	26	1/1	26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남동구의 소계							5,543					
79	남동구 구월동	774-0		전	전	813	1/1	813	임상민				제2종일반주거지역
	임상민의 소계							813					
80	남동구 구월동	464-0		전	전	3,848	1/1	3,848	임상옥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4-0		전	구	346	1/1	346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4-1		구	구	10	1/1	10					자연녹지지역
	임상옥의 소계							4,204					
81	남동구 구월동	770-0		대	대	403	1/1	403	장만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40-9	황의만	근저당권	제2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1	주식회사 에이스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	제2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간석복지점]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2-20 타워플러스 604호	주식회사 쓰리제이개발	가압류		제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70-0		대	도	50	1/1	50	인천 남동구 간석동 240-9	황의만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간석복지점]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2-20 타워플러스 604호	주식회사 쓰리제이개발	가압류		제종일반주거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1	주식회사 에이스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장만희의 소계							453					
82	남동구 구월동	492-1		전	전	761	1/1	761	장현대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문남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문남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장현대의 소계							761					
83	남동구 구월동	790-2		전	전	1,266	1/1	1,266	장형기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90-5		구	구	182	1/1	182					자연녹지지역
	장형기의 소계							1,448					
84	남동구 구월동	765-4		대	대	496	1/1	496	전옥순				제종일반주거지역
	전옥순의 소계							496					
85	남동구 구월동	782-1		전	전	955	1/1	955	전종문				자연녹지지역
	전종문의 소계							955					
86	남동구 구월동	457-1		구	구	164	1/1	164	정두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동구 창영동 41	(국)인천세무서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4 동방빌딩2층	인천광역시 세정과	보상금채권에		자연녹지지역

											대한 압류가압류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남구청 세무1과	보상금(채권) 에 대한 압 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57-3		구	구	126	1/1	126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4 동방빌딩2층	인천광역시 세정과	보상금(채권) 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남구청 세무1과	보상금(채권) 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2동 남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세무과]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동구 창영동 인천세무서	(국)인천세무서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2동 남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세무과]	압류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57-4		구	구	24	1/1	24	인천 동구 창영동 인천세무서	(국)인천세무서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2동 남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빌딩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2동 남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4 동방빌딩2층	인천광역시 세정과	보상금(채권) 에 대한 압 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 남구청 세무1과	보상금(채권) 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0-1		구	구	45	1/1	45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4 동방빌딩2층	인천광역시 세정과	보상금(채권) 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 남구청 세무1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동구 창영동 41 인천세무서	(국)인천세무서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0-2		구	구	26	1/1	26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 남구청 세무1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동구 창영동 인천세무서	(국)인천세무서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4 동방빌딩2층	인천광역시 세정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0-4		구	구	81	1/1	81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4 동방빌딩2층	인천광역시 세정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 남구청 세무1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동구 창영동 41	(국)인천세무서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0-5		구	구	187	1/1	187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 남구청 세무1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동구 창영동 41	(국)인천세무서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4 동방빌딩2층	인천광역시 세정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0-6		구	구	43	1/1	4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4 동방빌딩 2층	인천광역시 세정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동구 창영동 41	(국)인천세무서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 남구청 세무1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0-7		구	구	42	1/1	42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4 동방빌딩2층	인천광역시 세정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 남구청 세무1과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압류		자연녹지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경인영업본부 인천채권관리2팀]	강제경매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인천광역시 남구청	압류		자연녹지지역
									인천 동구 창영동	(국)인천세무서	압류		자연녹지지역
	정두섭의 소계							738					
87	남동구 구월동	472-4		전	전	1,002	1/1	1,002	정명숙				자연녹지지역
	정명숙의 소계							1,002					
88	남동구 구월동	550-1		전	전	476	1/1	476	정순용	서울 중구 다동 39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인천영업부)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다동 39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인천영업부)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정순용의 소계							476					
89	남동구 구월동	768-0		답	답	1,005	1/2	503	정영선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본점	중소기업은행[만수동지점]	근저당권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본점	중소기업은행[만수동지점]	지상권	제2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69-5		전	전	16	1/1	16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본점	중소기업은행[만수동지점]	지상권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본점	중소기업은행[만수동지점]	근저당권	제2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69-5		전	도	23	1/1	23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본점	중소기업은행[만수동지점]	근저당권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본점	중소기업은행[만수동지점]	지상권	제2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69-6		대	대	639	1/1	639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본점	중소기업은행[만수동지점]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남동구 구월동	769-7		전	전	330	1/1	330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본점	중소기업은행[만수동지점]	지상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본점	중소기업은행[만수동지점]	근저당권		제종일반주거지역
	정영선의 소계							1,511						
90	남동구 구월동	781-0		전	전	410	1/1	410	정용희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82-2		전	전	790	1/1	790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정용희의 소계							1,200						
91	남동구 구월동	472-5		전	전	503	1/1	503	정지우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관교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관교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정지우의 소계							503						
92	남동구 구월동	855-3		전	전	945	1/1	945	조만수	인천 남동구 간석동 571-3	조철수	소유권이전 창안등기		자연녹지지역
	조만수의 소계							945						
93	남동구 구월동	798-0		전	전	1,046	1/1	1,046	조정미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98-0		전	도	35	1/1	35						자연녹지지역
	조정미의 소계							1,081						
94	남동구 구월동	472-2		전	전	1,534	1/1	1,534	조한휘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72-2		전	도	36	1/1	36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신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만수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조한휘의 소계							1,570					
95	남동구 구월동	468-0		전	전	1,729	1/1	1,729	차인환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78 사정골매전 81호	박은희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차인환의 소계							1,729					
96	남동구 구월동	448-6		전	전	1,951	1/1	1,951	채만규				자연녹지지역
	채만규의 소계							1,951					
97	남동구 구월동	784-4		전	전	1,739	1/2	870	채원석				자연녹지지역
	채원석의 소계							870					
98	남동구 구월동	465-1		전	전	2,115	1/1	2,115	최덕수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65-1		전	구	34	1/1	34					자연녹지지역
	최덕수의 소계							2,149					
99	남동구 구월동	831-3		답	답	265	1/1	265	한상희				자연녹지지역
	한상희의 소계							265					
100	남동구 구월동	473-2		대	대	182	1/1	182	허은무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73-3		대	대	148	1/1	148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473-4		전	전	1,078	1/1	1,078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용이지점]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허은무의 소계							1,408					
101	남동구 구월동	550-7	550-2	도	도	126	2/10	25	홍균				자연녹지지역

	홍균의 소개							25						
102	남동구 구월동	550-7	550-2	도	도	126	1/10	13	홍미란					자연녹지지역
	홍미란의 소개							13						
103	남동구 구월동	526-0		전	전	549	1/1	549	홍성중					자연녹지지역
	홍성중의 소개							549						
104	남동구 구월동	758-1	758	답	답	140	1/2	70	홍승원					자연녹지지역
	홍승원의 소개							70						
105	남동구 구월동	550-7	550-2	도	도	126	3/10	38	홍용					자연녹지지역
	홍용의 소개							38						
106	남동구 구월동	550-7	550-2	도	도	126	2/10	25	홍윤					자연녹지지역
	홍윤의 소개							25						
107	남동구 구월동	777-0		전	전	4,278	1/1	4,278	황문규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78-0		전	전	5,063	1/1	5,063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78-0		전	목	370	1/1	370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78-0		전	대	98	1/1	98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78-0		전	도	168	1/1	168						자연녹지지역
	황문규의 소개							9,977						
108	남동구 구월동	783-0		전	전	2,050	1/1	2,050	황연식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건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시장출장소]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29-53	이천형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건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시장출장소]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남동구 구월동	783-1		구	구	122	1/1	12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29-53	이천형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건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시장출장소]	지상권		자연녹지지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건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월시장출장소]	근저당권		자연녹지지역
	황연식의 소개							2,17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1131호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변경)열람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 9.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변경없음)
 - 1) 사업의 종류 : 도로 (소2-1호선)
 - 2) 명 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위치 및 개요(변경없음)
 - 0 소2-1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37-12번지 일원폭원(B)=10m,연장(L)=292m
4. 보상시기(변경) : 2011. 10월중
5. 공고 열람기간(변경) : 11. 9.19 ~ 11. 10. 3
6. 보상금지급처(변경없음)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7. 보상대상(변경)
 - 0 토지
 - 소2-1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37-12번지 (1필지/225㎡)
 - 0 토지조서(소2-1호선)

고시 일련 번호	동명	지목	공부	편입면적(㎡)		잔여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로 내	도로 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도림동	임	225.0	0	225.0		연수구 동춘동925-7 삼환아파트 120-1007	심혜란			

0 지장물 : 상기 지번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변경없음)

- 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 0 토지면적1/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내 시행자에게 요청시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1인을 추천할 수 있음.

9. 보상절차(변경없음)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개별 통지

10. 열람장소(변경없음)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11. 기타사항(변경없음)

토지 및 지장물조서등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시개발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11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8호(2010. 05. 26)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이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2010. 11. 15)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편입된 영업 및 지장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불입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3. 면 적 : 841천㎡
4.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5. 계 시 기 간 : ‘11. 9. 20(화) ~ ‘11. 10. 4(화)
6. 협 의 기 간 : ‘11. 8. 22(월) ~ ‘11. 9. 21(수)
※ 수용재결 신청 예정일(‘11. 9. 28)까지 추가협의 가능
7. 협 의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번지)
⇒ 인천도시개발공사 별관 1층 구월지구 보상계약실
8. 기 타 :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사항은 상기 협의장소(032-260-5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고대상자 : “불입” 대상자 명단 참조

2011년 9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붙임] 대상자

연번	소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대상토지 및 지장물소재지	사유	비고
1	지장물소유자	김예중	620709	남동구 구월동	498-3	수취거절	
2	이해관계인	주식회사 남선알미늄	170111	남동구 구월동	594-1	폐문부재	

※ 상기 기재된 성명별 대상 지장물소재지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생년월일이 불분명한 분들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금액 등은 명시하지 않았사오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1159호

소액수의(빗물이용시설 제작설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기후변화대응 빗물이용시설 제작 설치

나. 구입물품 : 붙임 시방서 참조

다. 설계금액 : 14,000,000원

라. 입찰방법 : 견적입찰, 총액입찰

마. 납품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사.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1. 09. 26(월) 10:00 ~ 2011. 09. 29(목)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09. 29(목)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자. 발주부서 및 담당자 : 환경보전과 손철호(☎032-453-2605)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물품분류번호8자리 241118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저장용탱크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3. 입찰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입찰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가)의 90%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1호, 2010.10.26)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가의 경우에는 추첨결정)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환경보전과(032-453-2605 손철호)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남동구 재무과(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11 - 4호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년 9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정이유

남동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시설사용, 관람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무, 위원의 임기를 규정 [규칙 제3조 ~ 제7조]
- 시설의 사용신청, 허가, 허가결정기준, 사용료, 환불 규정을 규정
[규칙 제9조 ~ 제14조]
-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 [규칙 제15조 ~ 제17조]
- 관람권의 종류, 발행 및 검인,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대상을 규정
[규칙 제18조 ~ 제21조]
- 관람권의 판매, 정산, 환불 및 변경을 규정 [규칙 제22조 ~ 제24조]
- 문화교육 강좌 감면, 환불을 규정 [규칙 제25조 ~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437번길 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문화예술회관(전화 : 453-5183, FAX : 453-5189, E-mail : nana mi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 9. .

제 출 자 : 남동문화예술회관장

☐ 제정이유

남동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시설사용, 관람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무, 위원의 임기를 규정 [규칙 제3조 ~ 제7조]
- 시설의 사용신청, 허가, 허가결정기준, 사용료, 환불 규정을 규정 [규칙 제9조 ~ 제14조]
-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 [규칙 제15조 ~ 제17조]
- 관람권의 종류, 발행 및 검인,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대상을 규정 [규칙 제18조 ~ 제21조]
- 관람권의 판매, 정산, 환불 및 변경을 규정 [규칙 제22조 ~ 제24조]
- 문화교육 강좌 감면, 환불을 규정 [규칙 제25조 ~ 제26조]

☐ 본 문 : 아래 참조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설의 운영

제2조(임시휴관일)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남동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게시판·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예술 담당국장,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가
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회계 및 세무전문가,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소속 직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회관 운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기대관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5. 그 밖의 회관 운영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라 함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말하며, 정기대관은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전시의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전시장 대관허가의 사용기간은 1주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관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3.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 관장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기준) ① 조례 제7조에 의거 정기대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회관 기획공연·전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공연,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전시, 단체공연·전시, 개인공연·전시 순

2. 단체간·개인간 경합된 경우에는 공연·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 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시 대관의 경우 선착순에 의하며 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사용허가일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회관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대설비 사용료는 회관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 제1항 1,2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조례 제10조 제1항 3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 신청일이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이 안될 경우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부대설비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회관이 규정한 사항 및 관장이 이행

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시설·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관람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제17조(공연진행 협의) ① 사용자는 공연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무대스텝과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회관 무대스텝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진행 사항에 대하여 회관 무대스텝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관람

제18조(관람권의 종류 등)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편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① 관람권은 공연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관장에게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 3.공연장소
- 4.좌석번호
- 5.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한다)
- 6.관람자 준수사항

제20조(초대권의 발행) ① 관람권과의 교환을 위하여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무대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관람료) ① 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관장이 정하며, 대관 공연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결정한다.

② 관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할인대상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할인율 50% 이내)

나.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할인율 20% 이내)

2. 면제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22조(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① 유료관람권의 판매는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위탁판매 금액 및 내역은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여성합창단 공연 관람권의 판매금액 중 직접 판매분은 다음날까지, 위탁판매 분은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종류별로 그 판매현황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관람권의 환불 및 변경) ① 관람권의 환불은 해당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이며 판매가격으로 환불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공연 당일에는 환불이 불가하나, 공연당일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매표소에서 바로 관람권을 예매한 경우에는 공연시작 전까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불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변경은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제5장 기타

제25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등) ① 조례 제18조의 강사료는 문화교육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수강생 수 등에 따른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②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는 조례 별표 2의 범위에서 관장이 결정한다.
③ 수강료의 환불은 불가함이 원칙이나, 강좌 시작 전 또는 1개월 이상 연속 강좌의 수강치 않은 나머지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환불할 수 있다. 환불시에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6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 대상자에게는 수강료를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중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단, 유족은 선순위자에 한한다)
4.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관람료 면제대상 범위(제21조제2항제2호 관련)

대 상	장 소	범 위	비 고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실내·외 공연장	기관·단체대표, 일반시민 등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행사 및 각종 문화 공연·전시 (회관 기획공연 등)	“	해당분야 관련법상 유공자, 기관·단체 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 위 의료급여 특례대상자, 소년소녀가 장, 보육료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일반저소득층 등	
신년 및 송년행사	“	“	
시민문화 강좌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하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전시	“	직 원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남동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처리기간	
				정기 30일 / 수시 7일	
단 체 명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법인번호 /주민등록 번호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 시 · 공 연 행사의 명칭					
전 시 · 공 연 행사의 내용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일 회 시간)		
행 사 · 안 내 요 원 수			출 연 인 원 수		
			관람예상인원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부속시설	☐ 스튜디오 () ☐ 연습실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회의실 (대, 소)			
입 장 료					
첨 부	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문화예술회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 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행사 및 시설사용 계획서

공연(행사)장소			공 연 (행 사) 명		
공연(행사)일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 전 준 비	년 월 일(시 ~ 시)	
			리허설및무대연습	년 월 일(시 ~ 시)	
			본(행 사)공 연	년 월 일(시 ~ 시)	
출 연 예 상 인 원		장비반입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시설물		사용계획(시간)		시 설 물		사용계획(시간)			
무 대 조 명	기 본	대공연장		무 대 시 설	바 텐	총 사 용 량			
		소강당				공 연 작 동			
	Follow Pin	공연행사준비			덜 마 루	본 행 사			
		본 행 사							
	Black Light	공연행사준비			댄 스 플 로 어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본 행 사			
	Elipsoid Light	공연행사준비			음 향 반 사 판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본 행 사			
	Strobe Light	공연행사준비			기 타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본 행 사			
	Par64	공연행사준비			기 타 시 설	피 아 노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본 행 사		
	Par46 (1세트 8대)	공연행사준비				냉 · 난 방			
		본 행 사							
	Par Bank (1세트 4구)	공연행사준비				분장실	주연급		
		본 행 사					단체 (남·여)		
	드라이아이스 기 계	공연행사준비				대·소도구			
		본 행 사							
포그 기계	공연행사준비		기 타						
	본 행 사								
무 대 음 향	마 이 크 [유선(), 무선()]	공연행사준비		※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포그기계액, 배터리,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본 행 사							
	M · R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빔프로젝트 사용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문화예술회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허 가 조 건

(뒷면계속)

- 사용료를 납부기한(계약금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4일 내,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내)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사용일 15일전까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7조, 규칙 제9조)
- 허가받은 시간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은 할 수 없으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9조)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조례 제10조)
- 남동구문화예술회관장은 천재지변 및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 제8조)
 - 종교행사, 정치관련 행사, 상품판매 행사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목적, 허가조건 위반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 시설·설비관리 및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본 회관의 검인이 없는 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검인신청은 공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3조 및 제19호)
-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본 회관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회관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법규 : 조례 제11조 및 규칙 제15조, 제16조)
-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무대스텝과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스텝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7조)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스텝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귀 회관의 허가조건 및 회관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성명 :

(서명)

회관 사용시 유의사항

행사 및 공연을 하기 위해 남동구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시설유지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행사 및 공연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공연장 안에서는 음료수, 커피, 물등을 마시거나 식사등은 절대 불가하며, 화환, 꽃다발,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행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미리 준비하여 행사 종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시고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해 나가야 합니다.
3. 행사시 도난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회관이 책임지지 않사오니 귀중품은 주최측의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4. 주최자는 행사 및 공연시작 전 반드시 위의 1, 2, 3항을 행사 참석자 및 관람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회관 내 부착할 광고물(현수막, 현판 등)은 회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현수막 게시는 각 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수막은 광장 현수막 게시대(6m×0.9m), 대공연장 바텐 (14m×1m이내), 소강당 현수막 게시대(9m×0.6m)에 일정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광고물은 회관 내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규칙 제16조)
6. 각종 홍보물(현수막 및 벽보등)은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부착하여야 하고, 현수막은 남동구청 건축과에서 필히 검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불법게시로 적발되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에 의거 의법 조치됩니다. 또한, 공연 및 행사 후에는 반드시 홍보물(현수막 및 벽보 등)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7. 회관의 시설과 공연장은 주민의 문화예술생활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므로 개최하는 행사 및 공연내용이 본래의 대관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깨끗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사항을 준수하시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회관대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문화예술회관 (☎ 032-453-5190 / Fax 032-453-5189)으로 연락바랍니다.

<알면>

– 110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문화예술회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 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남동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 허가서

사 용 자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명 칭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부속시설	☐ 스튜디오 () ☐ 연습실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회의실 (대, 소)			
사 용 료	계		기본설비/ 부속시설		부대설 비	
계 약 금						
납 부 기 한						
기 타 사 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남동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대장

일련 번호	사 용 허 가 자	신청자	프로그램명	사용기간	연락처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남동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정기 30일 / 수시 7일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단체의 소재지 또 는 대표자주소				대표전화번호		
				휴 대 폰		
공연전사행사 명 칭						
공 연·전 시· 행사의 내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출연자수	()명
	년	월	일	까지	관람예정객수	()명
사 용 시 설 및 설 비	기본시설/ 부속시설	☐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 스튜디오 () ☐ 연습실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회의실 (대, 소)				
	부대설비					
감 면 신 청 사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문화예술회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귀하

<알면>

[illegible]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문화예술회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 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주 최			공 연 자		
공 연 명			공연장소		
공연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일간 회)
판매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일간 회)
검인신청 매수	총 매				
공연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일간)	: 2 회
종별	수량		금액		비고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유 료	매		원		
초 대	매		원		
총 계	매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 - 7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대로2-46호선)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대로1류2호선 대로2류46호선, 사업명: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주변도로(대로1-2호선, 대로2-46호선) 확장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453-2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9.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2호선, 대로2-46호선)

【명칭】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주변도로(대로1-2호선, 대로2-46호선)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연번	시설명	규모	비고
1	도로 : 대로1-2호선	L=76m, B=3m	
2	도로 : 대로2-46호선	L=174m, B=3m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있음)

구 분	성 명	주 소	비고
당 초	(주)두현건설 김경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2-9 신한데뷰오피스텔 609호	
변 경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심형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0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별첨” 토지조서의 토지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붙임】

1. 대로 1-2호선 토지조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관계내용	성명	주소	
당초	1	남동구 구월동	1139-29	대	896.2	63.0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2-9 신한 데뷰오피스텔 609호	—	—	—	
변경	1	남동구 구월동	1139-29	대	896.2	63.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 파이낸스센터 19층	—	—	—	
당초	2	남동구 구월동	1139-30	대	590.8	51.0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2-9 신한 데뷰오피스텔 609호	—	—	—	
변경	2	남동구 구월동	1139-30	대	590.8	51.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 파이낸스센터 19층	—	—	—	
당초	3	남동구 구월동	1139-31	대	1,273.5	106.9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2-9 신한 데뷰오피스텔 609호	—	—	—	
변경	3	남동구 구월동	1139-31	대	1,273.5	106.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 파이낸스센터 19층	—	—	—	
합계					2,760.5	220.9						

2. 대로 2-46호선 토지조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관계내용	성명	주소	
당초	1	남동구 구월동	1139- 8	대	775.6	52.1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동 1132-9 신한데뷰오피 스텔 609호	—	—	—	
변경	1	남동구 구월동	1139- 8	대	775.6	52.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 737번지 강남파이 낸스센터 19층	—	—	—	
당초	2	남동구 구월동	1139- 9	대	379.7	30.0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동 1132-9 신한데뷰오피 스텔 609호	—	—	—	
변경	2	남동구 구월동	1139- 9	대	379.7	30.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 737번지 강남파이 낸스센터 19층	—	—	—	
당초	3	남동구 구월동	1139-12	대	379.3	30.0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동 1132-9 신한데뷰오피 스텔 609호	—	—	—	
변경	3	남동구 구월동	1139-12	대	379.3	30.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 737번지 강남파이 낸스센터 19층	—	—	—	
당초	4	남동구 구월동	1139-13	대	759.0	60.0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동 1132-9 신한데뷰오피 스텔 609호	—	—	—	
변경	4	남동구 구월동	1139-13	대	759.0	60.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 737번지 강남파이 낸스센터 19층	—	—	—	
당초	5	남동구 구월동	1139-17	대	497.0	39.0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동 1132-9 신한데뷰오피 스텔 609호	—	—	—	
변경	5	남동구 구월동	1139-17	대	497.0	39.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 737번지 강남파이 낸스센터 19층	—	—	—	
당초	6	남동구 구월동	1139-20	대	379.6	30.0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동 1132-9 신한데뷰오피 스텔 609호	—	—	—	
변경	6	남동구 구월동	1139-20	대	379.6	30.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 737번지 강남파이 낸스센터 19층	—	—	—	
당초	7	남동구 구월동	1139-21	대	379.3	30.0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동 1132-9 신한데뷰오피 스텔 609호	—	—	—	
변경	7	남동구 구월동	1139-21	대	379.3	30.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 737번지 강남파이 낸스센터 19층	—	—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관계내용	성명	주소	
당초	8	남동구 구월동	1139-24	대	379.7	30.0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2-9 신한테뷰오피스텔 609호	—	—	—	
변경	8	남동구 구월동	1139-24	대	379.7	30.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	—	—	
당초	9	남동구 구월동	1139-25	대	379.3	30.0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2-9 신한테뷰오피스텔 609호	—	—	—	
변경	9	남동구 구월동	1139-25	대	379.3	30.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	—	—	
당초	10	남동구 구월동	1139-28	대	766.2	60.7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2-9 신한테뷰오피스텔 609호	—	—	—	
변경	10	남동구 구월동	1139-28	대	766.2	60.7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	—	—	
당초	11	남동구 구월동	1139-29	대	896.2	111.3	두현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2-9 신한테뷰오피스텔 609호	—	—	—	
변경	11	남동구 구월동	1139-29	대	896.2	111.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	—	—	
당초	12	남동구 구월동	1139- 6	도로	1,527.7	18.0	인천광역시	—	—	—	—	
변경	12	남동구 구월동	1139- 6	도로	1,527.7	18.0	인천광역시	—	—	—	—	
합계					7,498.6	521.1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 - 7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9. 2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고시기간 : 2011.09.22 ~ 2011.10.06 (15일간)
2.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48번길 32외 95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랐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한 내 남동구청 새주소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간 : 2011. 9. 22(목) ~ 2011. 10. 6 (목)
- 나.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에 대한 의견
- 다.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제출방법
 - 우편주소 :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 문의전화 : 새주소팀 032-453-2470 (FAX : 032-453-2479)

4.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9.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5.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48번길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05-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55번길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41-13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26번길	15-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3-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3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8-20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1번길	7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42-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1번길	6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43-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1번길	6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43-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6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3-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84번길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29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27번길	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3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27번길	9-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87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7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6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6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64번길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5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5-1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39-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5-1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5-3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4-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3-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52번길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1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9-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30-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58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3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05번길	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5-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05번길	64-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5-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9번길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9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7번길	12-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1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7번길	12-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1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92번길	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5-2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92번길	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5-2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3번길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3번길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3번길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9번길	14-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3번길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9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6-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6-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1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2-1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6-3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39번길	72-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8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1번길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6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1번길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6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1번길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7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3번길	2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118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3번길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118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3번길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118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3번길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118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25번길	64-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6-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25번길	6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6-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25번길	6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6-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4-13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3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4-13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5번길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7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29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3-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3-1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12-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3,107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6번길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69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7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69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37번길	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6-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37번길	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6-3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35,136-3,136-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53-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37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36번길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8-1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6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35번길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75-1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36번길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7-1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89-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0-1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8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0-13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70번길	6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0-9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1-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1번길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1번길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1번길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91-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6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7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5, 124-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1번길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4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1번길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43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1번길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53-3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98번길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6-1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7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44번길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20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7-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4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3-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5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4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3-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32-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15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67번길	3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30-1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67번길	3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30-17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6번길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0-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9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6번길	2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0-4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68번길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2-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9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6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3-15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6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3-16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7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72-2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7번길	1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1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7번길	12-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11	20110922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 - 78호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1-25(2011.04.22)호로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1-1번지 일원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고시문 전문

○ 당초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68(2009.06.01)호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1-1번지 일원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43)및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68(2009.06.01)호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1-1번지 일원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상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43) 및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80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정사항 없음, 이하생략)